직업 건강 및 안전 그리고 개인과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

WorkSafe
Travail sécuritaire NB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직업 건강 및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법률*이 개인 및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New Brunswick의 OHS 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자신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주변의 건강 및 안전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OHS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WorkSafeNB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 이해하기

OHS 법 및 본 지침은 "피고용인" 및 "고용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 정의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어떤 범주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고용인이란 자원봉사자나 실습생과 같이 무보수 근로자인지 임금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인이란 피고용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을 뜻하며 감독관, 관리자, 소유주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직무 책임과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다음 세 가지 기본 권리를 갖습니다.

- 알 권리
  해당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입 직원, 전근 직원, 경력 직원 등 모든 피고용인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위험 요소
  - 안전한 업무 절차
  - 응급 상황 절차
- 직무에 확신이 들지 않거나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언제든 관리자에게 추가적인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시오.
- 참여할 권리
  건강 및 안전 문제 해결과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확인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피고용인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공동 건강 및 안전 위원회(Joint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JHSC)가 구성되어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우려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귀하의 직장에서 JHSC 대표가 누구인지 알아본 뒤 사업장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귀하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다고 믿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단계: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우려를 보고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경우 업무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2단계: JHSC가 있는 경우 사안을 보고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JHSC가 없는 경우...
  3단계: WorkSafeNB(1 800 999-9775)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로 돌아갑니다.

* 어떤 경우에서든 근무가 끝날 때까지 직장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귀하의 책임

피고용인으로서 귀하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법률* 및 규정 준수
-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본인 또는 타인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행동
- 인지한 위험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고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 JHSC 또는 안전 책임자와 협력
- 부상으로 이어졌거나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고

귀하의 고용인은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피고용인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 취하기
- 법률 및 규정 준수
- 피고용인들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 도구 및 장비가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유지 관리
- 최소 한 달에 한 번 사업장의 건강 및 안전 위험 여부를 점검
- 피고용인에게 사업장의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고지
- 모든 새로운 피고용인에게 업무를 시작하기 전 건강 및 안전 연수를 제공
-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건강 및 안전 훈련을 제공하고 업무를 감독
-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유상 또는 무상 제공), 장비가 잘 유지 관리되며, 이용할 수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JHSC와 협력하고 WorkSafeNB에 보고해야 하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통지
-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떠나기 전 사고에 대해 알리도록 절차 수립
- 연중 어느 시기든, 시간제 또는 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된 직원이 세 명 이상인 경우 WorkSafeNB에 등록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상황의 경우, 고용인은 반드시 WorkSafeNB (1 800 999-9775)에 즉각 통지해야 합니다.

- 폭발 사고 또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제제의 노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재난 사고 혹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부상 피해가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음을 비롯한 부상 발생 시
  - 의식 상실
  - 절단
  - 골절(손가락 또는 발가락 제외)
  - 응급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상실
  - 응급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깊은 열상
  - 치료를 위해 병원 시설에 입원
  - 사망

*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대처이거나, 추가 부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거나, 사고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도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WorkSafeNB에 등록된 고용주 밑으로 고용된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더 이상 정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관련 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에 따른 귀하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려면 당사 웹사이트의 "Workers(근로자)" 또는 "Employers"(고용주)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우리의 비전

WorkSafeNB는 New Brunswick의 근로자와 고용인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직업적인 질병을 방지하는 것이며,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재활 서비스 및 보상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ORKSAFE
TRAVAIL SÉCURITAIRE NB

1 800 999-9775

www.worksafenb.ca